

[Issue Report]

---

#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 주요 민생·권력기관 개혁 8대 과제 이행상황 평가

---

2017 8월 14일(월)



## 목차

글	03
총평	05
일자리 분야	08
노동 분야	13
검찰개혁 분야	21
공정거래 분야	25
주거·부동산·가계부채 분야	29
환경 분야	38
세월호	44
한반도 평화	47

## 여는 글

# , 문재인 정부 공약이행 점검과 평가에 나서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검찰개혁, 재벌개혁과 갑을개혁, 민생개혁, 환경과 핵문제의 공론화, 일자리와 노동개혁 등의 공약들은 민변이 그 동안 줄곧 제기해 왔던 우리사회의 개혁과제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남긴 정치적 부패, 사회적 양극화, 빈곤층의 확대, 권력의 남용과 헌정질서의 파괴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이 널려있다. 그에 대한 충실한 개혁을 위해서는 적폐의 청산작업만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구체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해야 함은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사회개혁 과제들의 성공은 정치적 성과를 떠나 우리사회 모두 책임을 나누어 짊어져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민변은 검찰·국정원·경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재벌과 갑을(불공정)개혁, 언론과 교육개혁, 주거·가계부채·서민금융 등 민생개혁, 환경과 원전문제, 통일과 평화 정착, 성평등과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 등 주요한 개혁과제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점검)과 비판, 공론화와 개혁의 촉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런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

부패하고 민생을 돌보지 않는 권력에 대한 개혁을 외쳤던 많은 시민단체들의

전문가들이 개혁의 성공을 위해 정권에 참여하기도 하고 계속 비판의 칼을 세우고도 있지만, 우리 세대에 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절박감은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다. 우리 민변도 같은 심정이다. 개혁의 과정에서, 때로는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도 필요할 것이고, 때로는 날카로운 감시와 매서운 비판이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변은 치우치지 않고 협력과 비판의 정도(正道)에 서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행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것이다. 오늘 내놓는 평가보고서는 그런 작업 중의 하나이다.

2017년 8월 14일(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

---

총평

## 정부 100일 민생과 권력기관 개혁의 명암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정부인수위원회의 성격을 가지는 국정기획자문회의를 거치며 행정부처와의 협의 절차를 통해 많은 부분 100대 국정개혁과제로 선정되었다. 행정부처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행정부처에서도 국정과제로 선정 필요성이나 이행에 대한 책임을 공감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약이 행정목표가 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가맹점 거래, 대리점거래, 대형유통점 납품거래 등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등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이나 금융, 세제, 청약제도 등 전반에 걸쳐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국토교통부 행정 등을 보면 행정공무원들의 개혁의지도 읽을 수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사회양극화, 노동자의 근로빈곤층화, 주거비 등 가계부담의 증가, 부동산투기 등 경제정의를 훼손하는 투기의 만연, 지나친 재벌주도의 시장지배현상 등의 폐해가 심화되고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소득주도성장과 가계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인상, 통신비·주거비·의료비 등의 주거부담 완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보호와 경쟁력 강화 등의 정책은 여론에서도 70% 이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이나 경제권력인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개혁은 지지부진하다. 서울중앙지검이 민생검찰을 표방하고 공정거래전담부를 본격 가동시키며 Mr.피자 회장 등 대표적 갑질행위와 건설사 담합에 나서는 모습은 새로운 모습이지만,公安부와 특수부 중심의 검찰행정체계의 개혁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주택과 상가 임대차, 폭리제한과 채무자 회생 등의 서민생활에 밀접한 법무행정과 재벌총수들의 전횡방지를 위한 회사법(상법) 개혁 등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행정의 개혁은 검사 대신 일부 전문변호사를 임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검·경 수사권조정이나 부패전담기구 설치 등의 보다 근본적 개혁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개혁과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가 여전하다. 국정원은 과거 선거·정치개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민을 보호하는 해외정보기관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근본원인인 국내문제 개입근절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집회와 파업 등 헌법상 기본권 실현행위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국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경찰은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과거와 같은 공안일변도의 행정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으나, 제도적 개혁의 플랜은 보이지 않는다.

민생개혁 공약의 이행에 있어서도 국회의 법개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개혁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정책들 중에는 추진계획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어 실망을 주는 부분도 적지 않다. 민간부문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늘리기의 핵심적 방안인 노동시간 단축은 먼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침 변경만으로도 연장+휴일근로의 장시간 노동을 막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인사지침, 취업규칙 해석지침 등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제약하는 각종 지침의 개폐가 특별한 명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가임차인들에게 가장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인하, 서울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조사권한 조정 등 서민의 생활개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차원의 개혁들의 구체적 추진이 미흡하다.

또한 몇몇 공약의 이행에서는 체계적 완결성이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수단으로 국정과제로 떠오른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는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인상규제,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골목상권활성화, 사회보험료 부담지원 등 중소기업 보호대책이 병행되어야 하나 발표와 달리 중소기업 지원·육성 행정의 추진은 지지부진하다. 우리사회에 만연된 하도급, 가맹점, 대리점, 대형유통업체 불공정 등 갑을개혁에 있어서도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창업부 등 관련 행정기관의 협력과 역할분담이 필요하나 민생검찰 따로, 공정위 개혁 따로, 중소기업창업부는 보이지 않고 이러한 유관기관 사이의 협력 행정을 통해 개별구체적 사안과 정책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나가기로 한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는 출범논의도 없다. 강력한 부동산투기 규제로 주택가격이 하향안정화 될 전망으로 젊은 중산층들이 집을 사지 않고 전세를 선택할 경우 전월세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데, 투기규제책만 있고 임대차갱신, 인상률상한제와 같은 임대차 안정화정책은 뚜렷한 플랜 없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다.

한편 생태계 보전대책과 같이 공약에는 있었으나 국정개혁과제로 선정되지 않은 개혁과제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논의 하기로 하였으나 긴급하게 배치된 사드 4기오 같이 공약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제들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약의 이행과 폐지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100일 중소기업창업부 등 아직 정부내각도 다 구성하지 못하였다. 촛불혁명의 급속한 정치개혁을 거치며 들어선 정부로서 정부구성에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공약을 국정개혁과제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적극적 지지를 이끌고 있다. 개혁의 추진에는 시간은 더 필요하지만 아예 개혁의 자신감을 보이지 못하는 분야도 있고, 해당 행정부처 공무원들이 개혁과제를 수긍하지 못하고 부유하는 분야도 보인다. 개혁을 외치는 공중전은 열심히 하였지만, 개혁의 추진을 담당할 행정부처는 움직이지 않는 혼란을 겪었던 과거 참여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부 내부에서부터 개혁의 동력을 고양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창출 분야 평가

### 일자리 창출 주요 3대 공약사항

#### [공약사항 1]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관, 부서관, 근로감독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17.4만개 창출
- 사회복지, 보육, 요양, 장애인 복지,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창출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및 공공부문 간접고용업무의 직접고용 등으로 30만개 내외 확충

#### >> 이행상황 1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 7. 19.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현재 각 부문 별 일자리 창출방안을 만들기 위해 경찰, 소방, 사회복지, 보건 등의 분야에 대한 산업고용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에서 로드맵 마련을 위한 실무 작업 중.
- 추경 중 공무원 일자리 관련 예산 상당 수준 삭감된 채 통과. 경찰, 군부서관, 생활안전분야 등 중앙정부 공무원 2575명 및 소방관, 사회복지공무원, 교사 등 지방정부 7500명 증원키로 함(추경안 1만2000명보다 소폭 감소한 1만75명



증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등의 일자리 34만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정부는 2017년 하반기에 가칭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법’을 발의하고, 내년 부터 시·도별로 공단 설립을 시작한다는 계획임. 현재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면서 일부 광역자치단체들과 협의 진행 중.
- 공공부문 간접고용업무의 직접고용과 관련해, 2017. 7. 24.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정부는 각 부처들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TF’를 구성했고,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실 내에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을 설치했음.

## [공약사항 2] 일자리위원회 출범과 일자리중심 행정체계 구축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출범, 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 정부의 경제, 사회정책 전반에 고용영향평가 강화. 예산편성, 국가R&D 정책
- 자금, 공공조달계약, 조세·금융 등에 좋은 일자리 창출 효과 최우선 반영.

### >> 이행상황 2

- 2017. 5. 10. 일자리위원회 설치, 2017. 5. 16.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의결.
- 2017. 8. 8. 일자리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 의결. 고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을 1,000개 정부예산 사업으로 확대하고 예산편성과 연계키로 함. 정부·지자체에 일자리 전담조직을 지정 또는 신설하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평가방식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

### [공약사항 3] 비정규직 규모 OECD 수준 감소 위한 로드맵 마련

- 기간제·파견 및 하도급, 특수형태고용 등 비정규직 규모 감소를 위한 로드맵 마련 및 제시
- 정부 및 지자체 공공부문 상시일자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
- 공공부문에 ‘고용친화적 경영평가제’, 민간부문에 ‘비정규직 비중에 따른 조달 사업 참여 제한제’ 등 고용형태에 따른 연계 인센티브제 확대
- 고용형태공시제(민간대기업 대상)에 비정규직 사용목적 및 주요 업무 공시 의무화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 도입,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 도입

### >>이행상황 3

- 공공부문 간접고용업무의 직접고용과 관련해, 2017. 7. 24.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정부는 각 부처들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TF’를 구성했고,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실 내에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을 설치했음.
- 현재의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행상황 없으나, 위 가이드라인에서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와 관련해, 공무원, 상담직 등 기관별로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신분증 발급, 직군·교육훈련·승급체계 마련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시스템 강화하기로 함.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17. 7. 31. 2017년도 경영평가편람을 수정해,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에 가점(10점) 신설하고, 공공기관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력을 확대하는 경우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 민간부문 ‘비정규직 비중에 따른 조달 사업 참여 제한제’는 진행상황 없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 7. 19.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사용사유제한의 범위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규정할 계획).

## [평가]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 이러한 정책기조는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흐름까지 이끌어내고 있음. 에스케이, 씨제이, 두산, 롯데, 엘지유플러스, 기업은행, 신한은행, 한화 등 대기업들이 잇따라 기간제나 파견·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과 관련한 정책 의지는 확고해 보임. 다만, 부문별 증원규모 및 증원시기와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법론 등을 포괄하는 로드맵의 발표를 서두를 필요가 있음.
- 지난 정권에서 기관 정원 통제 등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양산을 주도한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적 재편이나 조직 변경 등은 전혀 하지 않은 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움.
-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 노·정간 접촉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노·정간 공식 협의 창구를 만들어 정책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전환과 관련해서는, 노사 및 전무가 협의체 구성방식 및 구체적인 전환방식 결정을 두고 현장에서 빗어질 갈등·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과 적극적 중재가 필요함.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의 경우,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하게 확정하고, 사회서비스

공단 설치법의 제정,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 후속 입법 활동에 나서야 함.

-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전환대상에서 배제될 일부 직군에 대한 처우개선, 전직지원 등 구체적인 후속 대책 수립을 서둘러야 함.
-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시점을 조속히 확정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 추진과 관련한 입법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임.

## 분야 평가

---

### 노동 분야 주요 6대 공약사항

#### [공약사항 1] 비정규직 처우개선

-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비정규직 차별해소 실행위원회 구성, ‘동일 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세부적 적용기준 마련, 1년 미만 근속자 퇴직급여 보장 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적극적 해소
- 공정임금제 도입
- 원·하청기업의 근로조건결정 및 산업안전분야 등에 대한 공동사용주책임 법제화, 용역의 고용·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대기업 불법파견 근절 및 직접고용·고용의제 제도화

#### >> 이행상황 1

- 2017. 6. 1. 발표된 ‘일자리 위원회 100일 계획’은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8월) 세부내용으로 “비정규직 차별 관련 제도개편 등을 통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적용” 명시.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 7. 19.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국정운영계획”)에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비정규직 포함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공정임금제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질서 정책패키지 마련, 원청의 공동사용자 책임 강화 관련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정 등을 국정과제 주요내용으로 제시함.

- 국무조정실·법제처가 2017. 7. 20. 발표한‘국정과제 관리계획’은 신속정비 대상 하위법령(154건)에 고용형태 공시 등 관련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포함.

## [공약사항 2] 최저임금 1만원

- 현행 최저임금(시급)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보호·지원방안 마련 제시

### >> 이행사항 2

- ‘일자리 위원회 100일 계획’은 최저임금 1만원 2020년 달성을 목표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6월),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공공입찰시 감점 부여 등 시행(7월), 상습위반 사업장 명단공표 요건 완화(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출, 8월), ○최저임금 전담 감독관 신설 및 관계부처 합동 일제단속(기초고용질서 미준수 행위 전반) 실시 추진하는 것으로 함.
- 이후 2017. 7. 15.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작년(6,470원)보다 1,060원(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정부는 곧바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약 3조원의 인건비 초과인상분(일자리 안정자금) 직접 지원 계획을 포함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고(7. 16.),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저임금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향후 기재부, 고용부 등에 일일 상황반을 설치·운영하면서 당분간 주 3회 단위로 T/F를 개최할 계획임을 밝힘(7. 17.).

- 지원대책의 내용 중에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는 7. 2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시행 중이며, 세액공제 확대는 8월 세제개편안에 반영되었고, 각종 재정지원책은 9월 수립하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함.
- 한편, 국정운영계획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국정과제 주요내용으로 명시함.

### [공약사항 3] 노동시간 단축

- 2021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종합 점검 추진단” 구성. 기업별 노동시간공시제도 도입하고, 국가차원의 노동시간단축 계획 수립
- 연장근로(휴일을 포함)를 포함한 법정근로시간 주52시간 상한제 전면이행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법 제59조) 및 적용제외 산업(제63조) 축소와 1주 60시간 상한제 도입
- 임기내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도 ‘법정 근로시간’한도 적용
- 장시간 노동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위반 기업에 대한 규제강화
- 출퇴근시간기록의무제(일명 ‘칼퇴근법’) 도입, 포괄임금제도 규제, 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근절 대책 마련

### >> 이행사항 3

- ‘일자리 위원회 100일 계획’은 “주당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을 위해 ○근기법 개정안 조기 국회통과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고용부 행정해석 폐기 추진, ○영세사업자와 근로자 보호 위해 종합 지원방안 마련(6월) 제시.
- 국정운영계획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합동, 2017. 7. 25.)은 국정과

제 및 정책방향의 주요내용으로 노동시간 단축 관련 위 공약사항들을 명시함.

- 현재 근로시간 단축 및 특례업종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원발의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더 이상 구체적인 추진상황은 제시되지 않고 있음.

#### [공약사항 4] 노동행정·근로감독 강화

- “일자리 최소기준”(최저임금·사회보험·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노동행정·근로감독 강화
- 노동위원회에 임금체불심판권 부여하고 근로감독관은 법률위반에 대한 수사업무에 집중하도록 업무조정, 근로감독관 추가 증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노동관계법 합동수사TF 운영

#### >> 이행사항 4

- “일자리 위원회 100일 계획”은 “일자리 기초질서 강화 위해 근로감독관 500명 증원(추경안 반영)” 명시. 그러나 이후 추경안 협상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최종 200명 증원에 그침. 현재 선발절차 진행 중임.
- 그 외 추진상황 없음.

#### [공약사항 5] 노동기본권 보장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단



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제98호),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강제노동 철폐 협약’(제105호) 비준 및 그에 따른 국내법 개정

- 특수고용노동자, 실직자·구직자 등 노동기본권 보장,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교섭창구단일화제도 개선방안 마련, 산별교섭 등 초기업단위 단체교섭 촉진, 단체협약 적용 범위 확대 및 효력확장제도 정비,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남용 제한 등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노사자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공공·금융부문 성과연봉제,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변경지침’의 즉시 폐기 및 자의적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 행정지도 중단
- 그밖에 미조직 노동자 지원조직으로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추진, 사업장 내 “종업원대표” 제도 실질화, 경찰·소방관도 직장협의회 구성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및 민간기업에 확산

## >> 이행사항 5

- 이상의 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공약사항은 국정운영계획의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과제에 반영되었음. 여기서 “노동기본권 신장 및 취약근로자 권리보장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의 목표가 제시되었는데, 2018년까지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대부분의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이 2018년부터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한편, 2017. 6. 16.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하여 성과연봉제 시행방안 및 시기를 기관 자율에 맡기도록 하고, 경영평가지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 평가를 제외하여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며, 종전 보수체제로 환원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공약사항 6]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산재발생 사업장에 대한 책임강화 등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개념 확대 재정립,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의무가입, 상시적으로 행해지는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하도급을 전면 금지, 도급사업에서 원청사업주 책임 강화 및 중대재해와 산재다발 사업장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강화
- 산업재해 신고의무 위반 사용자에게 형벌을 부과 등 산재은폐 일벌백계, 산업현장 위험 발생 후 작업 재개 시 동의권을 원·하청 근로자 모두에게 부여, '물질안전보건자료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한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
- 감정노동자의 긴급피난권 보장 및 산재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감정노동자보호법 제정

### >> 이행사항 6

- 문재인 대통령은 2017. 7. 3.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영상메시지에서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①원청·발주자까지 책임 확대, ②파견, 용역 노동자 보호 강화, ③ 사고 사업장은 안전 확보 시까지 작업중지 및 근로자 의견청취, ④ 대형인명사고의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 등을 제안함.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고용노동부는 2017. 8. 17.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할 예정임.
- 한편, 국정운영계획의 국정과제 주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 관련 위 공약사항들이 포함되었음. 관련 입법계획으로 공동사업주 책임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임금지급 보증제 도입 등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2018년 상반기에 국회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평가]

- 아직까지 새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노동분야 공약사항의 이행을 검토하는 것이 성급한 감이 있음. 지금까지는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일자리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외의 노동분야 공약사항들을 빠짐없이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실행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이라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함.
-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하여 그 원칙과 의지는 천명하였으나 공약사항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정책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민간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8월) 이후 보다 진전된 내용을 기대함.
- 2018년 최저임금 결정 후 곧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곧바로 시행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재계의 우려와 고용 관련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후 최저임금 인상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근로감독행정 강화, 최저임금 산입범위, 적용대상,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성 제고 등 대책 마련 요구됨.
- 노동시간 단축은 이미 2010년 노사정이 약속한 사항이므로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공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일자리 위원회 100일 계획에는 법 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고용부 행정해석 폐기를 추진하고 6월 중에 영세사업자와 근로자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음. 특히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현재 논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설득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임.
-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현실과 노동법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있었음. 노동현장에 만연한 각종 불법·탈법을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노동행정·근로감독 강화임. 당초 정부계획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올해 말까지 근로감독관 200명 증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음. 이를 바탕으로 노동위원회와의 업

무조정, 노동관계법 합동수사 TF 운영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마련해야 할 것임. 나아가 수사기관의 노동사건 전문성을 제고하고 특히 검찰 공안부의 노동사건 담당 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하여는, 그 추진 방법에 있어서는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한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 수립으로 하고, 그 추진 시기에 있어서는 2018년 이후로 하여 그 정책순위가 후순위로 되었음. 각 경제주체들 간의 대립적 이해관계와 여소야대 상황을 감안할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도 있으나, 사회적 대화 기구의 구체적인 형식과 내용이 국정과제를 통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유감임. 전교조, 전공노의 범외노조 문제와 관련된 ILO 핵심협약 비준의 경우 국내법 개정을 우선 추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철학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결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전교조와 소속 교사들의 관련 소송이 장기간에 걸쳐 수십 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데, 사법부에게 그 결정의 부담을 줄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양대지침(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역시 즉시 폐지함이 마땅함.
- 대통령이 직접 산업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을 높이 평가함. 특히 대형인명사고 시 국민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은 세월호 사건의 경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국가와 사회 전체의 안전의식과 책임고양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함. 추후 발표될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기대함.

## 분야 평가

### 검찰개혁 주요 3대 공약사항

#### [공약사항 1]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과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수사를 차단
-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경수사권을 조정
-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 보유

#### >> 이행상황 1

- 국정기획과제 ‘국민을 위한 검찰상 확립’ 발표함

2017년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관련 법령 제정, 2017년까지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 방안 등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안 마련, 2018년부터 수사권 조정안 시행 및 2017년부터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 구체화 및 내부 조직문화 개선을 로드맵으로 발표함

○ 법무부 산하 ‘법무 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등

8월9일 법무부 산하에 민간위원 17인으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킴. 동 위원회는 11월에 ‘법무·검찰 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며, 12월 정기국회에 법령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됨. 검찰청 역시 ‘과거사’에 관한 검찰총장의 사과발언, 수사심의위원회 발족 등의 자체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음.

## [공약사항 2] 검찰 인사 중립성·독립성 강화

- 독립된 검찰총장후보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찰총장임명에 있어 권력개입을 차단하고 검찰총장 국회출석을 의무화
-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고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억제
- 검찰총장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검사징계위원회와 감찰위원회의 위상 및 검사 징계의 실효성 확보

## >> 이행상황 2

- 국정기획과제 ‘검찰인사 중립성·독립성 확보’발표
    - 1) 2017년부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를 국정기획과제로 발표함
  -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대통령령 일부 개정
- 7월25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서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및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을 검사 단수 보임직급에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으로 그 보임범위 확대를 발표함

### [공약사항 3] 검찰의 외부 견제기능 강화 및 국가권력의 수사방해 행위 제 어

- 재정신청 대상을 현행 고소사건뿐만 아니라 고발사건까지 확대 적용하고, 공소 유지 변호사 제도 부활
-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불기소를 통제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법제화
- 청와대등 국가비밀 보유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부당거부 제한

#### >> 이행상황 3

- 법무부 산하에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통하여 관련 사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임. 다만 국정기획과제에서는 명시적으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임

#### [평가]

- 현재로서는 검찰개혁에 관한 공약 중 주요 부분을 국정기획과제에 포함하여 발표한 것을 포함하여 일정한 공약 이행 중이라고 할 수 있음. 다만 대선공약

에 포함되어 있던 ‘재정신청과 기소법정주의, 국가기밀 보유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부당 거부제한’ 등의 경우에는 국정기획과제에서는 누락되었음..

- 아울러 ‘법무부장관 및 그 소속직제’를 8월1일자로 개정시행하면서 ‘법무부 탈 검찰화’의 경우 부분적으로는 실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개정된 내용 및 실제 인사임용 수준은 공약사항에 비하여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임
- 법무부 및 검찰개혁에 관해서는 새롭게 출범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구체적인 입법안이 제출되면서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됨. 그러나 법무부 및 검찰 인사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새로운 정부가 행정으로 달성 가능한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다소 개혁의 속도가 더디다는 점에서 다소간의 아쉬움이 있음. 더불어 검찰이 법무부와 별도로 검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한 점도 우려가 됨. 새로운 정부는 검찰개혁에 관한 컨트롤타워를 분명히 하고 차질 없이 개혁을 추진할 것을 기대함



## 분야 평가

---

### 공정거래 주요 4대 공약사항

#### [공약사항 1] '을지로위원회'구성

-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가칭)' 구성

#### >> 이행상황 1

- 국정기획과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발표

국가적 차원에서 갑을문제 개선·해소를 위한 대통령직속 '을지로위원회' 설치 추진

#### [공약사항 2] 불공정한 갑을관계 근절

- 가맹사업, 대규모유통업, 대리점업 등 고질적인 갑을관계 분야에서의 각종불공정행위 및 갑질 근절 추진

가맹점사업자, 대리점사업자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하여 단체 구성권 부여

- 불법행위에 대하여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복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
-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 >> 이행상황 2

- 국정기획과제로 2017년 중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범집행 강화 발표
- 기술유흥, 부당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 근절방안 마련
-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및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권 명문화

### [공약사항 3]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

- 「공정거래법」 등의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이고 상대적 약자들의 보호를 강화

## >> 이행상황 3

- 국정기획과제로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한 로드맵 발표

- (전속고발제) '17년에 민사(징벌적배상), 행정(과징금), 형사(전속고발제)를종합 검토, 전속고발제 등 법 집행체계 개선 및 공정위 법 집행역량 강화
-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T'를 구성·운영하여 의무고발요청기관확대,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등 종합적 개선 방안 마련·추진
- 대기업집단, 유통·가맹·대리점 등 분야에 관한 공정위 조직·인력 확대 검토

#### **[공약사항 4] 공정위·지자체와의 협업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와 분쟁조정권한 등을 위임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추진

#### **>> 이행상황 4**

- 국정기획과제로 지자체 협업 로드맵 발표
- (지자체 협업) 2018년까지 범위반 조사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와 분담
-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공정위-지자체 간 법 집행 협의채널 구축 등도 추진

## [평가]

- 공약사항이었던 을지로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직속으로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해당 공약 실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단체구성권 명문화 등의 국정과제 발표 또한 공약이행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임. 그러나 관련 내용 대부분이 법 개정사항인 만큼 향후 관련 법률 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방안 마련’이나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 강화’와 같이 다소 추상적으로 언급된 국정과제가 실질적인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대선 공약인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의무고발 요청기관 확대 및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등으로 후퇴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지자체와의 협업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조사권 공유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은 빠져있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태도는 그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표적인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된 독점적 행정권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의지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는만큼 대선공약에 맞게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부동산·가계부채 분야 평가

주거 · 부동산 · 가계부채 주요 5대 공약사항

### [ 공약사항 1] 세대별 주거안정

#### 1. 저출산극복, 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 강화

- 공공임대주택의 30%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되, 통근이 편리한 곳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으로 확보 : 매년 4만호, 임기 중 20만호
- 도심 내 공공용지, 재생사업구역, 혁신도시 내 공공택지, 개발제한구역 등 가용할 수 있는 토지자원을 최대한 동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 대출 확대
-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부모 도움을 받지 않고도 첫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
- 저소득 신혼부부 중 위 프로그램(공공임대, 융자지원 등)의 혜택을 못받는 가구에 2년간 한시적으로 ‘신혼부부 주거정착 지원금’ 지원(2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
- 결혼후 2년내 출산시 공공임대 우선 배정, 다자녀비례 우선분양제 도입, 3자녀 이상 가구 큰평형 선택권을 보장
-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은 인구감소·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책

무로 공적택지와 자금을 총 집중하여 지원하겠습니다

## 2. 청년임대주택 30만실 공급을 통한 청년(1인가구) 주거비 부담 지원

- 월 30만원 이하의 셰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의 역세권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 공급 : 서울 및 5대 도시에서 20만실 확보
- 대학 소유 부지 및 인근지역 개발을 통해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수도권에서 3만명)
- 대학밀집지역에 주거, R%D, 일자리/창업이 연계된 소호형(SOHO, Small Office Home Office) 주거클러스터를 시범 건설

## 3. 노후불안 해소

- 양질의 저렴한 주거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장기공공임대주택 매년 13만호 수준 공급. 어르신 가구용 주택 할당
- 복지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포함

### >> 이행상황 1

- 신혼부부와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약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제 47번, 48번, 49번, 복합·혁신과제 3번)과 2017. 8. 2.자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 2017년에 이미 다가온 고령사회(65세 인구비율 14% 이상)에 대비한 어르신

가구용 주택 할당 및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확인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에서 2017. 9.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공지한 이상, 추후 발표될 주거복지 로드맵을 확인할 필요 있음

## [ 공약사항 2]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

### 1. 저소득 서민들에 대한 주거복지

-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노인, 장애인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
- 현재 약 81만 가구에게 제공되고 있는 주거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액수를 단계적으로 현실화
- 공공임대주택 등에 복지와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 등 지원주택을 매년 1만실 확대
- 자치단체별로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운영, 공공임대 공급·주거급여 외의 응급 주거 제공, 리모델링 지원 등 지역별 맞춤형 주거복지 프로그램 상담및 지원
- 중증장애인 전용 주거지원을 제도화하고, 홀몸어르신 거주 공공임대에 고독사 방지 ‘홀몸노인안심센터’를 설치
- 적은 목돈으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 시범 도입

### 2.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 공공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매년 13만호 확보 : 신축 7만호, 기존주택 매입 3만호, 기존주택 임대 3만호→임기 말까지 OECD 평균(8%) 이상인 9% 달성
-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주택의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관리하는 공공지원 임대주

택 매년 4만호 확보 : 준공공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 등

- 공공임대주택 입주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대기자 명부(Waiting List) 제도 도입
-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을 통합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

## >> 이행상황 2

-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공약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제 46번)에 포함되어 있음
- 다만 서민주거복지공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 계획이 없으며, 2017. 9. 중 발표될 주거복지 로드맵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 공약사항 3] 집주인과 갈등 없는 사회통합형 주거정책

-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사회보험료 특례 부과, 임대등록시 재산세·양도세 등 세제 감면, 리모델링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
- 임대주택 등록을 기반으로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의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및 임대료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 하고, 지자체별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내실화

## >> 이행상황 3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포함(과제 46번)



- 2017. 8. 2.자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시 인센티브 제도 포함
- 다만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및 임대료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공약사항 4] 도시재생 뉴딜로 노후주택 지원 및 생활여건 개선

-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매년 공공재정 10조원을 투입하고, 공공기관 주도로 추진 :매년 100개씩
-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주거지를 살만한 주거지로 바꿀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지원
  - 저층주거지에도 아파트단지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마을주차장,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을 지원하여 열린 단지로 육성하는 저층주거지 재생 모델 개발
- 구도심, 전통산업 집적지, 재래시장 등을 새로운 산업여건에 맞추어 집약적으로 정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경쟁력 제고 자산으로 활용
  - 개발 및 재개발사업 시 도시계획특례 등으로 저소득층 주거, 영세상업공간 확보 의무화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수립
- 노후화된 기존 주택을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공동으로 정비하거나 매입 혹은 장기 임차하여 수선한 다음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 쇠락한 농촌지역 고령어르신 공동주거인 생활복지주택 건설과 농촌노후 주택 개량사업 추진
- 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기업이 사업을 주도하되, 인센티브, 예산 및 기금 지원 도시계획 특례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사업모델 개발

- 7) 패시브/액티브하우스 등 녹색건축을 주거취약계층에 우선 적용하여 에너지 빈곤과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

## >> 이행상황 4

- 도시재생뉴딜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공약인 만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상당한 비중으로 포함(과제 79번, 복합·혁신과제 3번)되어 있음.
- 다만 공공재정을 투입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혜택을 입은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 대한 개발 이익 환수대책 및 기존 주거와 상가 세입자들에 대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공약사항 5] 가계부채 해결

### 1.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3단계 전략

- 부채주도에서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
- 적극적인 취약계층 부담 경감책 마련
- 금융소비자 보호를 우선하는 금융정책 운용(금융민주화)

### 2. 가계부채 해결 7대 해법

- 체계적인 가계부채 총량 관리 :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정상화, 여신관리지표로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 활용
- 빚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 구축 : 감소일로에 있는 가계소득 증가율 추세 전환, 생계형 대충 축소를 위한 생활비 절감 종합 계획 시행

-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 대부업 등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부과 금지
- 소액·장기연체 채무에 대한 과감한 정리 : 행복기금 보유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소각으로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의 생활권 확보
-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관리 강화 :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불법추심 방지법 제정으로 시효 경과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상환을 종용하는 행위 금지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 : 금융기관의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약탈적’ 대출 규제, 대출 등 금융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구제절차 확보
-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유한책임대출) 확대

## >> 이행상황 5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포함(과제 21, 29번)
- 2017년 6월 19일자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과 2017년 8월 2일자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지속적으로 LTV, DTI 규제 강화중
- 2017. 8. 중 가계부채 대책 발표 예정

## [평가]

-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과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대선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확인되고 있음.
- 다만 아직까지는 고령층과 저소득 서민들에 대한 주거복지 공약 이행 방안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2017. 9.경 발표될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해 확인이 필요함.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재정 투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대책과 주거 및 상가 세입자들에 대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은 구체적이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 대책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현재 수도권 및 광역시의 인구 및 도시 개발 집중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적인 저금리와 자산가들의 풍부한 현금 유동성은 주택 투기심리를 조장하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수도권 및 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상황은 더욱 불안정한 상황임.
-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6월 19일자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수도권, 광역 일부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 조정대상 지역에서의 LTV·DTI 규제비율 및 집단대출 규제 강화,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수 제한 등 투기 억제를 위한 조치들을 취한 바 있으나, 위와 같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특히 수도권의 주택 실수요자들은 정부의 위와 같은 대책을 믿지 못하고, 투기 세력을 따라 높은 주택 가격에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결국 6월 19일자 대책은 본래 의도한 특정지역에서도 투기적 수요를 제압하지 못하는 부족한 대책이었음이 확인되었음. 위와 같은 정부 대책의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 등을 통해 주택의 실수요자들이 시간을 충분히 두고 자신의 가정 형편에 맞추어 주택 매매 시장에 진입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신뢰를 지속적으로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볼 때, 2017년 8월 2일자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여전히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특정 지역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의 투기 수요를 억제할 강력하고 충분한 종합대책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문재인 정부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인상을 상한제 도입,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공동주택 후분양제 도입, 주택 보유세제 강화 등을 추가적으로 발표하여, 좀 더 강력하게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 주택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분야 평가

### 환경 주요 3대 공약사항

#### [ 공약사항 1 ] 국민건강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종합대책 마련

-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80% 감축추진
- 강력하고 촘촘한 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
-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
- 한중 정상외교의 주요의제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

#### >> 이행상황 1

-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공약의 구체적 실천과 관련하여 봄철 일부 석탄화력발전기 일시적 셧다운과 가동한지 30년이 지난 노후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가동중인 모든 발전소의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공장시설의 배출기준과 배출부과금 강화, 총량관리 대상시설은 반드시 실시간 굴뚝감시체계 설치와 설치비 지원,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 권고 수준으로 강화,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공항항만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은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하여 엄격하게 관리, 미세먼지 측정과 예보 인프라 대폭 보강하되, 측정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우선 설치,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

지대책 특별기구 신설하여 분산되어 있는 관련 부처들간의 협력,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강화, 특별기구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획기적인 감축과 강력한 미세먼지 관리대책 등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 점검, 현재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논의되는 한중,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을 정상급 의제로 격상,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다자, 양자 간 정보공유와 공동연구 강화를 발표한 바 있음

- 위 실천방안의 구체적 실천현황으로는 노후 화력발전소 4기에 대한 일시적 섯다운 발표 및 시행, 가동한지 30년이 지난 노후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를 한 바 있음, 또한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5개년 계획 100대과제 중 58번으로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목표로 선정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원인규명 및 예보정확도 제고를 위한 환경위성발사(20년), 측정망 확충, 한중 공동연구(17년5월~20년)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을 하여 20년까지 도심 측정소 대폭 확충 및 고농도시 예보정확도 74%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고, 석탄발전축소와 사업장 배출규제강화를 위한 17년부터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8기)일시 가동중단 및 신규건설불허, 18년 사업장 먼지총량제 시행 및 배출허용기준 20%이상 강화, 임기 내 30년 이상된 노후 화력발전소(10기) 전면 폐쇄를 목표로 내세웠음, 경유차비중 축소 및 친환경차 비중확대를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확대(서울-> 수도권), 조기폐차 사업 확대와 18년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의무화 및 디젤기관차 배출기준강화, 22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획기적 확대를 내세웠고, 19년 배출원이 밀집한 충청, 동남, 광양만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19년까지 한중 협력의지를 담은 미세먼지 공동선언문 발표를 하겠다고 하였음

### [평가 1]

- 문재인 정부는 정권초기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힘입어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하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4기에 대한 일시적

가동중단조치 등을 발표하는 등 가시적인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음

- 다만, 현재까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관리할 기구나 계획이 발표된바 없으며, 미세먼지 원인물질 분석에 대한 연구용역도 새정부에서 추가로 발주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중국발 미세먼지 및 원인물질과 관련하여 기존에 운영되어왔던 공동연구 이외에 추가로 계획되거나 발표된 것은 없음,

## [공약사항 2] 탈핵과 에너지 정책 전면 재검토

- 설계수명 다한 원적 즉각 폐쇄(노후원전 수명연장금지, 월성1호기 폐쇄)
- 신규원전전면중단(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및 이후의 모든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 설계수명이 남은 원전은 내진보강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상 및 독립성 강화
- 원자력안전기술원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기관에서 분리하여 독립성 확보
-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전환, 국민의 환경권 수호
-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 진행상황 없음원자력안전위원회 위상 및 독립성 강화

## >> 이행상황 2

-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공약의 구체적 실현방안과 관련하여 월성1호기 중단을 발표하며 바로 시행하였고, 신고리 5,6호기 공사중지 조치 및 공론화 위원회를 발족하였음,



- 또한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과제 중 60번 탈원전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을 목표로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원전신규 건설계획(추가 6기)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금지 등 단계적 원전감축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해 사용후 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하고,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원전해체 산업 육성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고, 위원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원전의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하며, 에너지가격체계개편을 위해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여 18년까지 산업용 경부하 요금 차등 조정, 단계적 요금 현실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개편 로드맵 마련을 할 계획이며 분산형 전원의 활용확대를 계획하고 있음

## [평가 2]

- 경주지진으로 촉발된 국민의 핵발전소에 대한 불안, 사용후핵연료 누적에 따른 보관장소 및 최종처리장 문제와 핵단지화에 따른 핵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핵발전비용에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 및 핵발전소 위험비용을 산입하여 탈핵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틀을 정권초기에 강하게 추진하고 있음
- 실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중단과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및 신고리 5,6 계획 철회를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가시적인 원전정책의 국면전환을 선도하고 있음
- 이에 원자력학계에서 반발하는 등 원전정책의 방향 설정과 관련한 국민적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현재까지 단기간에 원전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정책을 발표하여 처리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다만, 신고리 5,6호기 문제와 더불어 원전정책 및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공론화 문제도 조속한 병행 실행이 요구됨

### [공약사항 3] 자연환경생태분야

- 자연자원총량관리제도 도입
-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추진
- 해양환경 통합관리 컨트롤 타워마련 추진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전환, 국민의 환경권 수호
- 4대강 대형보 즉시 상시개방 후 재평가실시
-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보해체, 다자연화 여부 등 결정
- 4대강 전역에 대한 수자원활용 및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
- 자연자원총량관리제도 도입

### >> 이행상황 3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공약의 구체적 실현방안과 관련하여 4대강 대형보 즉시 상시개방 후 재평가실시,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보해체, 다자연화 여부 등 결정, 4대강 전역에 대한 수자원활용 및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 자연자원총량관리제도 도입, 자연자원총량관리제 도입,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해양환경 통합관리 등을 내세웠고, 이중 4대강 대형보에 대해 일부 하한수위로 개방하였고, 개방에 따른 효과의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음

또한,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5개년 계획 100대과제 중 59번으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조성을 목표로 내세웠으며, 구체적 내용으로는 18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 등 평가제도 혁신, 보전총량 설정(19년) 및 훼손가치만큼 복원대체의무화, 18년 10개 보 개방 방안등을 포함한 4대강 16개보 처리방안 확정, 19년부터 4대강 재자연화 대책에 따라 자연성회복, 복원사업 추진, 물관리 일원

화(17년), 유역관리위 설치 등 유역 거버넌스 구축(19년), 22년까지 취수원 다각화, 광역지방 상수도 통합으로 인정적 물공급, 22년까지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1,717km), 물순환도시 5개소 건설, 하수 재이용 등 상시 가뭄극복 물순환 체계구축을 하겠다고 하였음

### [평가 3]

- 생태계 보전과 관련하여 선거공약에서는 국적 운영과정에서 생태계보전을 우선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5개년 계획 100대 과제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공약에서 사실상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생태계 보전과 관련한 현 정부의 집행의지를 보여주는 오색삭도 사업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문재인 정부의 집행 여부에 대한 발표가 없는 상황이고, 사업강행에 대한 목인으로 보여지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어 지속적 감시가 필요함
- 4대강 대형보 일부에 대한 상기개방조치가 있었으나, 개방의 정도가 미약하여 실질적인 유속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비판이 있음, 환경부가 상시개방에 따른 효과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은 도출되지 않았음
- 4대강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등에 대한 논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현재 시작단계로 지속적 관심필요함

## 참사

---

### 세월호 선체조사 및 진상규명

#### [공약사항 1] 선체조사 및 진상규명

- 세월호 선체조사 가족/시민 참여와 선체의 온전한 보전
- 세월호 특조위의 재구성과 진실규명

#### >> 이행상황 1

- 가족과 시민의 선체참관이 완벽히 보장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선체조사위에서 선체의 보전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바 없음.
- 정부출범 이후선체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의견수렴의 미흡·조사 범위의 한계, 출범 이후 사무처장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음.
- 세월호 특조위의 재구성과 관련해서는 진전사항이 없음.

#### [공약사항 2] 피해자 지원

-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등.
- 안산에 대한 지원 대책(추모공원, 국립트라우마센터) 수립.

## >> 이행상황 2

- 세월호피해지원법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진행된 바 없음.
- 시행령 개정을 통한 세월호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기간제 교사에 한해 순직을 인정한바 있음
- 추모공원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진행된바 없고, 트라우마센터와 관련하여서는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진행된 바 없음.

## [평가]

- 현 정부는 세월호참사와 관련해서 향후 적절한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청와대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하지만 세월호참사 관련 대선공약들 대부분은 진행상황이 없거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기간제교사 순직인정은 현 정부가 뚜렷하게 대선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하지만 관련 시행령이 좁게 개정되어 여전히 비공무원의 순직인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음.
- 트라우마센터의 설립은 5개년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세월호피해지원법의 개정 및 추모공원의 설립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부차원의 조치나 계획이 없다는 점에 우려가 있음.

- 선체조사와 선체조사위에서 현재까지 사무처장의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선체조사 활동에 있어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전 정부에서 특조위를 강제로 해산시킴에 따라 중단된 진상규명을 신속히 재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특조위의 재구성과 관련하여,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라는 것 외에 정부차원의 조치나 뚜렷한 계획이 없다는 점에 우려가 있음.

## 평화

---

### 사드배치 현안에 관한 평가

#### [공약사항]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추진

-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하여서는 국회 비준동의로 대표되는 ‘공론화와 재검토’가 주된 입장이었음.

#### >> 이행상황

##### ○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진상 조사 대통령 지시사항(2017. 5. 30)

- 문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에 대해 진상 조사 지시.
- 문 대통령은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지시.

##### ○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 및 보고 누락 확인 발표(2017. 5. 31.)

- 청와대는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방부가 4기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

○ 보고 누락 경위 및 환경영향평가 회피 등 조사 결과 발표 (2017. 6. 5)

- 보고 누락 관련 국방부는 5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5월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업무 보고에서 4기의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반입돼 모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음
- 5월 26일 국가안보실장 업무보고를 위해 당시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발사대 6기, 추가 발사대 4기 보관 위치가 적혀 있었음.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이런 문구들을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함.
-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은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는 공개했지만, 4기 추가 반입 사실은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하여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도 삭제토록 했고, 구두로 부연 설명하라고 했다”고 말함.
- 보고 누락 책임이 일부 확인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은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들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됨

○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 국방부는 그동안 주한 미군에 공여된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며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확인됨.
-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25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체 공여 부지 70만㎡ 가운데 1단계 공여부지 면적은 32만8,779㎡로 제한하고 2단계 37만㎡ 부지를 공여한다는 계획을 세움. 1단계 부지를 33만㎡ 미만으로 지정함으로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계획한 것임. 선정된 부지 32만8,779㎡의 모양을 보면 거꾸로 된 U자형임. 거꾸로 된 U자형 부지의 가운데 부분 부지를 제외하기 위해 기형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보임.
-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가 수궁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함.

○ **총리실, 사드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합동 TF 구성·가동 발표(2017. 6. 7)**

- 사드발사대 추가반입 보고 누락,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회피 시도 등 사드배치를 위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합리적인 절차적 투명성 확보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오늘부터 범부처 합동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함.
- 국무조정실장(TF팀장. 홍남기), 국방부차관(서주석), 외교부1차관(임성남), 환경부 차관(이정섭), 국조실 1,2차장 등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
- 앞으로 합동 TF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회피 등 그동안 사드 배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안들에 대한 추가조사 문제,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 대응해 나갈 계획

○ **정부,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부지 환경영향평가 관련 결정 발표(2017. 7. 28)**

- 정부는 TF 건의 및 최근 상황을 종합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 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임.
- 다만, 국방부는 지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진행해 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기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임.
- 아울러 사드체계의 배치로 영향을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하여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해당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을 시행할 것이

며,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사드 레이더 전자파 안전성 검증과 공청회 등을 실시해 나갈 것임.

○ **환경부, 사드배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착수 발표(2017. 7. 28)**

- 지난 7월 24일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은 국방부 국방시설본부로부터 일부 사드 장비가 배치된 성주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을 받았음. 환경영향평가법 절차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임
- 국방부에서 공여부지 전체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환경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협의를 실시할 예정임

○ **사드 4기 추가 임시배치 발표. 북한의 ICBM 급 추정 탄도미사일 발사와 NSC 전체회의 결과 발표**

- 북한은 2017년 7월 28일 오후 11시 41분 자강도 무평리 인근에서 ICBM 급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기를 발사하였음.
- 문 대통령은 1시간 동안 진행된 NSC 전체회의에서 다음 4가지 사항을 지시했음.
  1.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보다 강력한 무력시위를 전개할 것
  2. 사드 잔여발사대 추가배치를 포함, 한미간 전략적 억제력 강화방안을 즉시 협의할 것
  3. UN 안보리 소집을 긴급 요청해 강력한 대북 제재안 마련을 추진할 것
  4.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

## [평가]

- 초기에 절차 준수와 의견수렴을 기조로 기존 국방부의 사업진행 과정의 문제점들의 일부를 드러내었음. 그러나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발표는 없음.
- 사드 4기 임시배치는 기존에 국회 사전 동의를 약속했던 공약에 위배되고, 적법절차 원칙에도 맞지 않음. 법령상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정황을 발견하였다고 하였으면서도, 법령상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꼼수로 전 정권이 진행했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인은 기존의 위법을 추인하는 것에 불과함.
- 과연 사드가 북한의 ICBM을 막을 수 있는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적절한 선택은 무엇인지와 관련한 공론화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임
- 절차적 투명성을 법령에 따라 확보하는 것이 길이 될 수 있음. 지금이라도 임시배치 협의 지시를 철회하고 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공론화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집필**

고윤덕, 김남근, 김준우, 김태근, 서채완, 이동우, 임주환, 최재홍, 하주희